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진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0.

발 의 자 : 주진우 · 김승수 · 엄태영
우재준 · 나경원 · 김은혜
신동욱 · 김도읍 · 서범수
고동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투표록 · 개표록 · 집계록 · 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기록을 해당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, 당선인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계속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음.

그러나 최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 · 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, 선거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장기간 보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투표록 · 개표록 · 집계록 · 선거록은 투표용지의 교부 · 사용 및 잔여수량, 투표 ·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, 개표 결과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등 선거관리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적 기록임. 이러한 기록이 당선인의 임기 종료를 이유로 폐기될 경우 과거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데 한계

가 있음.

과거에는 종이문서의 보관 공간과 관리비용 등의 문제로 선거기록을 영구보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, 현재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영구보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.

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투표록·개표록·집계록·선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고, 전자화 기록의 위조·변조·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여 그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86조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6조 항 외의 부분의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6조(투표지·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및 영구보존)

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·투표함·투표록·개표록·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을,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을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을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19조·제222조 및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서류의 원본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고, 그 전자화 기록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.

1. 투표록
2. 개표록
3. 집계록
4. 선거록

③ 제2항에 따른 전자화 기록이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본의 보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그 원본을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전자화 기록의 위조·변조·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고 그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전자적 형태로의 변환, 전자화 기록의 보존·관리 및 진본성과 무결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86條(投票紙・開票錄 및 選舉錄 등의 보관) 區・市・郡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紙・投票函・投票錄・開票錄・選舉錄 기타 選舉에 관한 모든 書類를, 市・道選舉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舉錄 기타 選舉에 관한 모든 書類를,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錄 기타 選舉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中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第219條(選舉訴請)・第222條(選舉訴訟) 및 第223條(當選訴訟)의 規定에 의한 選舉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<신 설>	제186조(투표지・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및 영구보존) ① 구・시・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・투표함・투표록・개표록・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을, 시・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을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을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19조・제222조 및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서류의 원본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고,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그 전자화 기록을 영구보존하여</u> <u>야 한다.</u> <u>1. 투표록</u> <u>2. 개표록</u> <u>3. 집계록</u> <u>4. 선거록</u> <u>③ 제2항에 따른 전자화 기록이</u> <u>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</u> <u>원본의 보관기간이 만료되기 전</u> <u>에는 그 원본을 폐기하여서는</u> <u>아니 된다.</u> <u>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</u> <u>항에 따른 전자화 기록의 위조</u> <u>· 변조 · 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</u> <u>하고 그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</u> <u>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</u> <u>하여야 한다.</u> <u>⑤ 전자적 형태로의 변환, 전자</u> <u>화 기록의 보존 · 관리 및 진본</u> <u>성과 무결성 확보 등에 필요한</u> <u>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</u> <u>칙으로 정한다.</u>
---	--